

# 예산총칙

201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55,145,000	10,654,350
일반회계	338,787,000	10,163,610
특별회계	16,358,000	490,740
기타특별회계	16,358,000	490,74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11,977	12,359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37,155	1,115
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	372,544	11,176
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	4,975,064	149,252
지하수관리특별회계	471,034	14,131
주차장특별회계	10,090,226	302,70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274,75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,19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와 재해대책의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, 시비보조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

※ 의존자원 표시

국고보조금→국      광역·지역발전→광      기금→기      시비→시      특별교부세→특세

특별교부금→특금      지방채→지